

울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나10310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나1031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소125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개명 전 성명 C)

변론종결 2024. 7. 18.

판결 선고 2024. 9. 5.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소12537 판결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주로서 기간 2011. 7. 25.부터 2014. 5. 25.까지, 계금 41,000,000원, 총 41구좌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낙찰계에 2구좌를 가입한 D 및 1구좌를 가입한 E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낙찰계는 매월 가장 높은 공제금을 써낸 계원이 낙찰되어 계금에서 해당 공제금과 식대 등을 뺀 나머지 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D와 E은 2011. 9. 25. 이 사건 낙찰계에서 전 회의 낙찰자 및 이번 회의 낙찰자로서 각 낙찰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는 2011. 9. 25. 공제금 15,925,000원을 써내어 낙찰되었다. 이에 계금 41,000,000원에서 공제금 15,925,000원, 식대 100,000원을 뺀 24,975,0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상회하는 D의 원고에 대한 기존채무와 상계 처리가 됨에 따라 실제 금원 수수는 없었다. D는 원고에게 계불입금 지급 목적으로 "41,000,000원을 2011. 9. 25. 차용하고 변제기일 2011. 10. 25.부터 2014. 11. 25.까지 매월 1,000,000원씩 분할 변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계금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계금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여기에 피고는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2) E은 2011. 9. 25. 공제금 15,955,000원을 써내어 낙찰되었다. 이에 계금 41,000,000원에서

공제금 15,955,000원, 해당 월의 계불입금 1,000,000원, 식대 100,000원, 기존 차용금 1,000,000원을 뺀 22,945,00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금차용증과 같은 내용으로 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계금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여기에 D는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D는 나머지 구좌를 낙찰받을 무렵인 2012. 2. 25. 원고에게 계불입금 지급 목적으로 "41,000,000원을 2012. 2. 25. 차용하고 변제기일 2012. 3. 25.부터 2014. 11. 25.까지 매월 1,000,000원씩 분할 변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3계금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계금 차용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금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D와 2014. 5. 25. 이 사건 각 계금차용증에 관련된 미납 계불입금들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합쳐서 미수금을 119,050,000원으로 정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이후 D는 원고에게 ① 10,390,000원(2014. 5. 26.부터 2017. 3. 10.까지), ② 20,700,000원(2017. 3. 11.부터 2020. 6. 25.까지), ③ 13,450,000원(2020. 6. 25.부터 2021. 9. 8.까지)을 지급하였고, 2021. 9. 8. 미수금은 74,510,000원으로 정리되었다.

바. D는 파산선고를 거쳐 2023. 2. 2. 울산지방법원 2022하면214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에 대한 미수금 74,510,000원 중 이 사건 제1계금차용증에 따른 피고의 보증채무는 22,94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이 남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낙찰계금을 수령한 D가 계주인 원고에게 41,000,000원을 2014. 11. 25.까지 매월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중 18,06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남은 22,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2.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보증한 D가 2011. 9. 25. 낙찰되었을 때 계금 41,000,000원에서 공제된 금원은 선이자와 같이 공제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금 지급에 따른 미납 계불입금을 청구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이 사건에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88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가 원고에게 2011. 9. 26.부터 2013. 9. 25.까지 44,120,000원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D가 원고에게 지급하였거나 공제한 금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어떠한 채무에 대한 것인지는 알기 어려운 점, 위 44,120,000원은 2011. 9. 26.부터 2013. 9. 25.까지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정산합의가 그 이후인 2014. 5. 25.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 지급액이 정산합의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내지 2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이 사건 채무를 모두 또는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이상으로 변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하여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계금차용증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D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남은 채무의 단독채무자로 변경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정산합의가 체결됨으로써 구채무인 이 사건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 즉 이 사건 정산합의가 민법 제500조의 경개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행하여 살펴본다.

가)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참조),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산합의 체결 당시 원고와 D,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각 계금차용증의 채무를 모두 소멸하는 대신 이 사건 정산합의의 채무자를 D로 한정하기로 하는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정산합의에는 보증인에 관한 약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보증인을 없애거나 주채무자를 변경하여 D를 각 채무의 단독채무자로 변경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계금차용증 상의 주채무자 내지 보증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D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에 이 사건 정산합의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가 아니라 기존채무 그 자체의 합계에 불과한 점, ④ 결국 이 사건 정산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은 이 사건 각 계금차용증 상의 채무액과 기존 차용금의 액수를 정리하여 미수금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⑤ 이 사건 정산합의에 불구하고 원고는 보증인이 있던 이 사건 제1, 2계금차용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합의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라기보다는, 기존채무의 남은 액수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하여 보증인인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고 D를 단독채무자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가 위 1의 바항과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주채무가 감축될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567조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파산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채무자인 D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그 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박성규

판사설정은